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보완성 연구” 에 대한 논평

박은호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발제자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토대로 하여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의 모호함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낙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태아의 생명 개념에 대한 모호성은 우선 태아를 인격체로 바라보는 입장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인 것만큼은 분명하지만, 무단 침입자이기 때문에 그를 몰아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발제자는 이 논증에 대해서 “마치 태아의 생성에 여성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무단 침입한 태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비겁한 논거라고 지적한다. 물론 성폭행을 통한 임신의 경우, 여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 역시 태아를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한 무단 침입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태아의 존재 자체는 그 자체로 위협적인 것이 아니다.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

두 번째는 태아 생명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특히 국가가 아이의 탄생을 국가 경제 발전의 논리에 종속시키면서 초래된 결과다. 즉,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는 지금도 나의 잘못된 행동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발제자는 생명의 존엄성이 상대적이 아닌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세 번째는 낙태를 모성적 결정과 관련짓는 것이다. 즉, 낙태가 모성적 돌봄의 사유라는 것이다. 모성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 되어 버린다. 발제자는 이러한 주장은 많은 비도덕적 행위까지 모성적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모성은 자녀와의 관계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녀를 지워버린다면 모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인데 “여성중심의 재생산정책을 주장”하지만 발제자는 “그 기저에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여전히 대립구도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다섯 번째는 태아의 생명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인 불편한 반응을 지적한다. 즉,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대립구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의 논문은 이렇게 낙태죄 폐지 주장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구도를 구성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검토한다. 중요한 점은 자기결정 자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어떤 현상적 혹은 심리학적 사실에 불과하지만, 권리가 될 경우, 그것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사회적 압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기결정권은 결코 한 개인의 실존적 문제로 그칠 수 없고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설정된다. 타인에 대한 고려 없이 자기 결정권은 성립할 수 없으며, 그런 면에서 규범적 요구와 부딪히게 되는데,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은 자기 결정권 행사에 대한 우선적인 제한이 될 수 밖에 없다.

자기 결정권의 관계적 측면은 곧 태아의 생명권과의 상호 보완성이라는 결론으로 이끈다. 자기 결정권은 타인의 생명 앞에서 제한되며,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임부의 자기 결정권은 낙태와 같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발제자는 상생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아는 여성의 몸의 무단 침입자도 아니고, 일방적인 의존적 존재도 아니다. “태아가 그 생명의 주체로서 임부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태아는 결코 임부의 몸속에 있더라도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태아는 단지 모태를 탈진시키거나, 소모하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모체와 태아는 서로를 존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미 상호 존중의 유대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임부의 행복과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지극히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주장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에 대해서 단순한 생명권의 우위 주장만으로는 소통의 길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낙태 옹호를 위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지적하고, 태아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여 임부와 태아의 상생의 길을 도모하려는 발제자의 논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이 논문은 최근에 있었던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 낙태 옹호론의 중요한 쟁점들을 알기 쉽게 나열하고 그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논란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만, 지면 관계상 각각의 주장들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낙태가 모성적 돌봄의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 단지 “모성적 돌봄이라는 정당화를 통해 많은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할 뿐이다. 발제자가 생각하는 모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낙태가 모성적 돌봄의 사유라는 주장이 지닌 모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팽팽한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존중된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루 3천 건의 낙태, 세계 1위의 낙태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단순하게 우선하는 방식의 논리는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현실과는 상관없는 법조문만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의 논리를 지적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면, 말 그대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낙태죄 폐지 주장은 단순히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무조건적인 낙태죄 폐지가 여성 해방의 필수 조건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에게 한 가지 묻고 싶다. 발제자는 “임부와 태아의 특별한 유대관계는 그 누구도 대신 해 줄 수 없는 여성 고유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여성의 자아 실현이 강조되고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일종의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역할이 지금껏 여성들을 남성에게 종속시켜왔다는 일부 여성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지 발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어려운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